제 27 호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3년 06월 09일까지 신고 바랍니다.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담당자 : 최원민 문의전화 : 031-940-5308

성명 생년월일	주소	지연 신고사항
이 *종 1957-06-21	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	무단전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

2023년 05월 30일

조리읍장 인